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18가단516423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D

변 론 종 결 2021. 4. 20.

판 결 선 고 2021. 5. 25.

주 문

1. 피고들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지분에 관하여 2013. 8. 15.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20,377,30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188,6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원고는 D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4가소6353544 판결에 기하여 16,409,570원 및 그중 5,391,743원에 대한 2014.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D의 처분행위 등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인 배우자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 F는 2013. 8. 1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들이 각 1/2 지분씩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11. 피고들 명의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는 2017. 3. 13. 대한민국(처분청 : 울산세무서)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나, 2017. 10. 23. 같은 달 20.자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는 2017. 10. 20. 근저당권자 G조합,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D의 무자력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D의 적극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9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D은 2017. 7.경 의정부지방법원 2017하단1551호로 파산을 신청하여 2019. 2. 13.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같은 법원 2017하단1551호로 신청한 면책신청은 2020. 1. 9. 기각되었고, 현재까지

항고심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울주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D이 무자력의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들에게 귀속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D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피고들은 D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선의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사해행위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부동산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채무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고(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들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인 2017. 10. 20. G조합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는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2)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때에는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조세채권의 경우 사해행위 전에 사해행위 목적물에 압류나 가압류가 마쳐진 때에는 집행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게 되므로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5. 23. H과 임대차보증금 1,700만 원, 차임 월 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2016. 11. 1. I과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I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가졌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는 2017. 3. 13. 대한민국(처분청 : 울산세무서)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나, 2017. 10. 23. 같은 달 20.자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7. 10. 20. 망인이 체납한 국세 8,635,19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돈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들은 피고 B가 망인을 부양해왔고, 자녀들이 망인의 병원비를 지출하였으므로, 병원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 의하면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의 성립을 다툴 수 없는바(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 참조), 공동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해 기여분이 산정되었다거나

피고들의 기여분에 관한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2019년의 시가는 138,000,000원(원고는 대지 가격을 별도로 계산하여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개별주택공시가격에는 대지의 가격도 포함되어 있다)이고, 여기서 위 국세 8,635,190원을 뺀 129,364,810원 중 D의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28,747,735원(원 미만 버림)이며, 이는 원고가 구하는 원고의 채권액 20,377,301원¹⁾을 넘으므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고의 채권액인 20,377,30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며,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188,6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수

(별지)

별 지 목 록

[부동산의 표시]

1. 토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 228.3㎡

2. 건물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적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110.40㎡

2층 86.66㎡

부속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변소

2.0㎡

- 이 상 -

1) 2018. 7. 20.까지의 채권액 합계이다.